[제3판] 2020. 5. 4.

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
원격수업 Q&A

2020. 5.
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

※ 해당 내용은 코로나-19 감염증 확산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안내사항으로 2020년도에 한해 운영되는 내용임

- 목 차 -

Ⅰ. 원격수업의 정의와 근거

Q1. 원격수업은 무엇인가요 ····· 1
Q2. 원격수업 추진 배경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····· 1
Q3.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원격수업은 의무인가요 ····· 1

Ⅱ. 원격수업의 절차와 유형

Q4. 원격수업은 어떤 절차로 추진되나요 ····· 2
Q5. 원격수업의 유형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····· 3
Q6. 원격수업 시 출강시수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····· 4
Q7.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급식비 등이 지원되나요 ····· 5
Q8. 원격수업 이후 출강결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····· 5
Q9. 원격수업 시 예술강사 근태 정보 입력과 학생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· 6
Q10. 제작한 결과물을 예술강사가 학교와 운영기관에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····· 7

Ⅲ. 원격수업의 운영

Q11.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은 반드시 학교에서,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요? · 8
Q12. 여러 학급이 동시에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경우, 출강시수는 학급당 1시수로 별도 인정되나요? ····· 8
Q13.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 활용 시, '콘텐츠 1차시분'의 인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? ····· 9
Q14.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따라 학교에 콘텐츠를 공급한 이후, 학생에 대한 피드백 등 사후관리도 예술강사가 별도 수행해야 하나요? ····· 9
Q15.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1차시분 콘텐츠를 학교에서 여러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출강시수는 4시수로 동일한가요? ····· 10
Q16.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격 수업 관련 교육에 예술강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? 가능하다면 그 교육 참석 시간을 '①실시간 쌍방향' 혹은 '③대면수업'에 의한 출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? ····· 10
Q17.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당초 분리 운영 예정이었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는데, 이 경우 학교의 시수 운영 계획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? ····· 11

Ⅳ.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

Q18. 학교는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····· 12
Q19. 예술강사가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····· 13
Q20.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하나요? ····· 13
Q21.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제공하는 콘텐츠 수량에 따라 각 개별 작성 하여야 하나요? ····· 14
Q22. 원격수업과 관련, 개인정보 보호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····· 14

Ⅴ. 관련 문의처 (17개 시·도 지역운영기관 연락처) ····· 16

※ 제2판 수정사항 : '원격수업의 운영' (Q11~Q17) 추가
※ 제3판 수정사항 : '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' 작성 관련 내용(Q20~Q21) 추가

Ⅰ. 원격수업의 정의와 근거

Q1 원격수업은 무엇인가요

◦ **학교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오프라인 수업은 등교수업**이며 **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원격수업**입니다.
◦ 즉, **원격수업이란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의미**합니다.

Q2 원격수업 추진 근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

◦ **원격수업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,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학교의 정규수업**입니다.
◦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격수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**(학교 대상)** 코로나-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 수요 충족
- **(학생 대상)** 문화예술교육 수혜 축소 최소화
- **(예술강사 대상)**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감소 최소화

Q3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원격수업은 의무인가요

◦ **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, 원격수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**
◦ 원격수업은 **학교의 수요와 더불어 예술강사도 원격수업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추진**됩니다.
◦ 다만, 수업일수 감소에 따른 예술강사 지원 선정(배치)시수 축소가 예상되는 학교-예술강사께서는 원격수업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학교 및 예술강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.

Ⅱ. 원격 수업의 절차와 유형

Q4 원격수업은 어떤 절차로 추진되나요

◦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격수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.

추진내용 및 절차			예술강사	담당교사 (학교)	운영기관
1	원격수업 추진 여부 확인	학교-예술강사 간 상호확인	■	■	
2	원격수업 추진 계획협의	학교-예술강사 간 유형, 일정, 규모, 저작권 관련 등 협의	■	■	
3	협의 내용 고지	예술강사가 운영기관에 고지	■		
4	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제출	(②유형의 경우) 학교와 작성하여 예술강사가 운영기관에 제출	■		
5	출강 활동	실시간 출강 및 콘텐츠 제작·공급	■		
6	출강활동 확인	실시간 출강여부, 제작 콘텐츠 검수		■	
7	출강결과 등록	온라인시스템 출강등록 (aschool.arte.or.kr)	■		
8	출강 등록 확인	온라인시스템에서 출강내용 확인(aschool.arte.or.kr)		■	
9	출강등록 내역 최종 확인	온라인시스템 출강내역 최종 확인(aschool.arte.or.kr)			■
10	강사비 지급	운영기관이 강사에 지급			■

◦ 출강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Q8.(6p)을 확인해주세요.

Q5 원격수업의 유형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

◦ 금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크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으로 구분됩니다.

- 원격수업 : ① 실시간 쌍방향, ② 콘텐츠 제작·활용
- 등교수업 : ③ 대면수업(기존의 예술강사-학생 간 대면 수업방식)

방식	구분	내용
원격 수업	① 실시간 쌍방향	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학교에 예술강사가 출강, 교육활동 추진
	② 콘텐츠 제작·활용	학교의 수요에 맞춰 예술강사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, 학교에 공급
등교 수업	③ 대면수업 (기존)	등교 개학 실시 이후, 대면 방식의 기존 예술강사 교육활동 추진

◦ 학교와 예술강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상기 각 방식을 혼용하여 금년도 문화예술교육 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.

※ ①+③, ②+③, ①+② 또는 ①+②+③등의 결합형태도 가능

◦ 각 유형 별 추가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① 실시간 쌍방향**
  - 학교는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 및 기자재 준비 필요
- **② 콘텐츠 제작·활용**
  - 학교-강사 간 협의에 따라 동영상, PPT, 기타 자료 등 제작 콘텐츠 종류 선택 가능
  - 해당 학교 전용의 콘텐츠 제작이 원칙이며 예술강사는 여러 학교에 동일한 콘텐츠를 중복으로 공급할 수 없음
  - 학교는 해당 콘텐츠를 여러 학급에 중복 활용 가능
  - 예술강사 제작 콘텐츠가 학교에 공급된 이후,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①번 유형 등의 예술강사 활동이 연계·추가될 경우 출강행위로 중복 인정 가능

- **③ 대면수업(기존)**

  · 원격수업 없이 ③번 유형만을 운영할 경우, 잔여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수 및 교육과정 확대 등 추진 필요

[적용예시 :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]

구분	당초	조정
(유형1) 수혜학급 확대	2개 학년, 총 10개 학급 × 20시수 = 200시수	4개 학년, 총 20개 학급 × 10시수 = 200시수
	등교수업에 맞춰 예술강사 출강 기간을 줄이되 대상 학급을 확대	
(유형2) 교육과정 확대	기본교과 200시수	기본교과 150시수 + 창의적체험활동 50시수

※유형2의 경우 A유형 강사에 한함

Q6 원격수업 시 출강시수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

◦ '① 실시간 쌍방향'은 기존 예술강사 출강(등교수업) 인정 기준과 동일, 1시수 당 43천원의 강사비가 지급됩니다.

◦ '② 콘텐츠 제작·활용'은 콘텐츠의 제작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차시분의 콘텐츠 공급 당 4시수의 출강 활동으로 인정되며, 강사비 또한 4시수 분(172천원)이 지급됩니다.

◦ 복수의 학급에 활용할 경우에도 제작된 차시만큼 시수가 인정됩니다.

- 제작된 1차시분 콘텐츠는 여러 학급에 사용하더라도 4시수의 출강으로 인정되며, 인정 시수와 사용학급 수는 무관합니다.

◦ 각 학교와 예술강사는 상기 활동 인정기준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선정(배치)시수에서 잔여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.

※ [예시]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

구분	원격 수업	등교 수업(등교개학 실시 이후)	합계시수
①+③ 유형	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40시수	③대면수업 160시수	200시수
②+③ 유형	②교육 콘텐츠 10차시 분 (40시수 분)	③대면수업 160시수	200시수
	②교육 콘텐츠 20차시 분 (80시수 분)	③대면수업 120시수	200시수

Q7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급식비 등이 지원 되나요

◦ 원격수업에 의한 출강도 등교수업과 동일하게 강사비 지급 대상이 되는 출강 행위로 인정되므로 '①실시간 쌍방향',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등에 의한 출강만 이루어지는 달에도 **월정 급식비는 동일하게 지원됩니다.**

◦ **교통비, 도서벽지출강보조금** 등 실제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, **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**

◦ 다만, **장애인출강보조금**의 경우, 장애인 예술강사의 생활안정을 돕는 취지에서 **유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합니다.**

◦ 그 외 **출산전후휴가, 근로자의 날, 건강검진, 법정의무교육** 등의 권리·의무는 원격수업만 진행하는 예술강사에게도 **동일하게 적용됩니다.**

Q8 원격수업 이후 출강결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

◦ 온라인시스템 내 출강결과 등록 화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, 원격수업 유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[시스템 변경 사항 : 출강결과 등록화면 내 [수업유형] 선택 항목 추가 예정]

	기존	변경
출강결과 등록화면 선택항목	사업명, 학교명, 분야, 교육과정, 수업일, 등록일, 수업시간, 수업대상, 수업주제, 수업내용/특이사항	사업명, 학교명, 분야, 교육과정, 수업일, 등록일, 수업시간, 수업대상, **수업유형**, 수업주제, 수업내용/특이사항

- 위 수정 사항은 2020년 4월 20일(월) 경에 반영될 예정임에 따라, 4월 출강결과는 수정 사항 반영 이후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◦ 수정 사항 반영 이후, 각 유형별 출강결과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① 실시간 쌍방향**

  · [수업유형] 중 (실시간) 선택

  · 기존의 대면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시간 및 수업주제, 수업내용 등 작성

  · 출강결과 등록

- **② 콘텐츠 제작·활용 (*콘텐츠 1차시당 4시수 인정)**
  - [수업유형] 중 (콘텐츠) 선택
  - [수업시간] '기타'를 선택, [총시수] 4시수 수기 입력
  - 콘텐츠 주제 및 내용 등 작성
  - 출강결과 등록
- **③ 대면수업(기존)**
  - [수업유형] 중 (오프라인) 선택
  - 기존과 동일

Q9 원격수업 시 예술강사 근태 정보 입력과 학생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?

◦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근태 정보 입력과 학생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
◦ 근태 정보 입력의 경우, **①실시간 쌍방향 수업은** 담당교사와 예술강사가 계획한 수업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, **③대면수업(기존)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**

- 단, **② 콘텐츠 제작·활용 방법의 경우** 제작부터 공급까지로 업무 내용이 한정되므로, **모든 수업의 근태 정보는 '정상'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.**

◦ 학생 만족도 조사는 **①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③대면수업(기존) 형태로 진행한 수업내용에 한하여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※②콘텐츠 제작 · 활용에 따른 출강시수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며, 만약 콘텐츠 제작 · 활용으로만 진행된 '분야-교육과정' 건의 경우에는 학생 만족도 조사 미실시

◦ 담당교사는 학생(평가자)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대면수업(기존)에 대하여만 만족도 조사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**반드시 사전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Q10 원격수업을 위해 제작한 결과물(제작 콘텐츠 등)을 예술강사가 학교와 운영기관에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?

◦ 예술강사는 원격수업을 위해 제작한 콘텐츠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.

◦ 콘텐츠가 제공된 후, 예술강사와 학교는 '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'를 작성하여야 하며, 예술강사는 그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'III.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' 참조

Ⅲ. 원격 수업의 운영

Q11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은 반드시 학교에서,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요?

◦ ①실시간 쌍방향 유형은 실제 학교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유형으로, 교통비 등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 금품이 그대로 지원되는 유형입니다. 따라서 **출강행위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**

- 단, ⓐ학교에 실시간 수업을 위한 기자재 등이 존재하지 않고, ⓑ학교가 학교 외 장소(예술강사의 자택 등)에서의 출강 행위를 희망하며, ⓒ예술강사 또한 학교의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ⓓ학교-예술강사 간 인정 출강시수에 대한 합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, 예외적으로 학교 외 출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◦ 실시간이 아닌 형태의 출강 행위(②유형에 따른 콘텐츠 제공 이후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) 또한 **학교-예술강사 간 협의에 따라 '①실시간 쌍방향 유형'에 따른 출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.**

Q12 여러 학급이 동시에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경우, 출강시수는 학급당 1시수로 별도 인정되나요?

◦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'근로시간'을 기준으로 설정·제공함이 원칙입니다. 예술강사 또한 각 지역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출강하는 근로자로서, 출강에 대한 강사비 기타 예술강사의 근로조건은 예술강사가 투입하는 '근로시간'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
◦ 따라서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으로 운영한 1개 시수에 2개 학급이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는 1시수로 인정됩니다.

- 단, 각 학급당 1개 시수 운영을 전제로 운영계획을 수립한 학교에서는 결손시수 최소화의 일환으로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 또한 각 학급마다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.

Q13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 활용 시, '콘텐츠 1차시분'의 인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?

◦ **ⓐ예술강사의 저작물로서 ⓑ콘텐츠를 활용할 학교가 '1차시분'으로서 인정하는 경우**라면, 콘텐츠의 종류나 분량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.

- 단, 교육 콘텐츠의 제작에 상당한 수준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, 학교는 예술강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제작을 요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
Q14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따라 학교에 콘텐츠를 공급한 이후, 학생에 대한 피드백 등 사후관리도 예술강사가 별도 수행해야 하나요?

◦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따른 예술강사의 과업 수행 범위는 '콘텐츠 제작에 이은 공급'까지로 제한됩니다. 따라서 학생에 대한 피드백 등 사후관리는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소진되는 '4시수'의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- 다만, 학교와 예술강사 간 협의에 따라,

  ⓐ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한 출강 활동

  ⓑ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관리

  ⓒ제공 콘텐츠 관련 과제 부여 및 결과 확인

  ⓓ기타 콘텐츠 공급이 완료된 이후의 출강 관련 행위

  등 **예술강사의 추가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, 콘텐츠 공급에 따른 시수 인정과 별개로 ①실시간 쌍방향 또는 ③대면수업 유형으로 활동 시수에 대한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.**

Q15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1차시분 콘텐츠를 학교에서 여러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출강시수는 4시수로 동일한가요?

◦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에 따라 학교에서 요구하고, 예술강사가 수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까지이므로 공급 이후의 사정은 인정되는 출강시수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◦ 따라서, 학교에서 공급받은 콘텐츠를 단수의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, 복수의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, 학교 측의 사정 변경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가리지 않고, **인정되는 출강시수는 1차시분 콘텐츠 하나당 4시수**로 취급됩니다.

Q16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격 수업 관련 교육에 예술강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? 가능하다면 그 교육 참석 시간을 '①실시간 쌍방향' 혹은 '③대면수업'에 의한 출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?

◦ 예술강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각 **'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이론 및 실기 지도 등 강의 업무'**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. 따라서 학교는 예술강사에게 교육 참여 등 출강행위 외의 활동을 요구할 수 없으며, 그 투입 시간을 출강시수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.

◦ 학교 사정상 예술강사가 양지하여야 할 사항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, 전자우편을 통한 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.

Q17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시수 조정 사례를 공유 받을 수 있나요?

◦ 원격수업 각 유형과 등교수업의 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수 조정이 가능합니다.

- 배치시수가 200시수인 학교A의 경우, 40시수는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으로, 120시수는 30차시분의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으로, 나머지 40시수는 ③대면수업으로 각 운영함이 가능합니다.

◦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수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도 원격수업 유형을 혼용하여 결손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- 위 학교A가 '①실시간 쌍방향' 유형에 따른 40시수만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, '①유형'의 운영과 동시에 '①유형'에 활용될 교육콘텐츠를 '②콘텐츠 제작·활용' 유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, 1차시의 수업 당 5시수(①유형 1시수+②유형 4시수)의 배치시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◦ 아래 예시와 같이 '①, ②, ③'유형 및 당초 안내드린 **'지원 수혜학급 확대(수혜학년 확대 포함)'** 등의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, 학교-강사별 결손시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.

※ 적용 예시 : 당초 5개 학급 각 40시수씩 총 200시수의 운영계획을 수립했던 학교 기준

	①실시간 쌍방향	②콘텐츠 제작·활용	③대면수업	운영 시수 계	활용 유형
조정 예시1	1회 X 40시수 (40시수)	40차시분 X 4시수 (160시수)	-	200	①+②
조정 예시2	-	20차시분 X 4시수 (80시수)	5학급 X 24시수 (120시수)	200	②+③
조정 예시3	1회 X 20시수 (20시수)	20차시분 X 4시수 (80시수)	5학급 X 20시수 (100시수)	200	①+②+③
조정 예시4	1회 X 20시수 (20시수)	-	9학급 X 20시수 (180시수)	200	①+③+ 학급확대
조정 예시5	-	20차시분 X 4시수 (80시수)	6학급 X 20시수 (120시수)	200	②+③+ 학급확대

Ⅳ.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

Q18 학교는 '②콘텐츠 제작·활용 유형'에 따라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

◦ **예술강사가 공급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예술강사에게 있고, 각 학교는 공급받은 콘텐츠를 해당 학교의 '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'에만 활용 가능**합니다. 해당 사업 이후 또는 다른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
※ 콘텐츠를 공급받은 학교는 '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'에 명시된 범주 안에서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◦ 또한 콘텐츠의 활용 시, 담당교사는 **원격수업이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해당 콘텐츠의 '출처'와 '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'을 명시**하고 **학생에게 저작물 및 예술강사의 얼굴 등을 다른 공간(사이트 등)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**해야 합니다.

※ (예시) 저작권 경고 문구 : 저작권법 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◦ **예술강사가 공급한 콘텐츠의 가공은 예술강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**합니다.

※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.

◦ 기타, 학교는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**원격수업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활용·운영되지 않도록 유의**해야 합니다.

※ 회원인증, 로그인 등을 통한 접근제한조치 필요

Q19 예술강사가 '②콘텐츠 제작·활용 유형'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

◦ 예술강사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활용할 경우,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※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'공유저작물' 이용을 권장

- **다른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, 사진, 글, 그림, 음원 등의 활용 시**, 각 **저작물의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출처 표기 필요**
- **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폰트 이용 필요**. 무료폰트도 사용 대상을 '개인'으로 한정하여 학교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'(주)한글과컴퓨터'에서 제공되는 폰트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주의 필요

◦ 제작한 콘텐츠가 별도의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시스템(e학습터, EBS 온라인클래스)을 통해 활용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**SD급(480p, 720×480) 이하로 제작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◦ 제작된 콘텐츠에 **다른 사람의 사진을 활용,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**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◦ 예술강사는 콘텐츠 제작 완료 후, 학교가 저작물(콘텐츠)을 활용하여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콘텐츠 공급 후 작성하는 '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'의 내용에 의함

Q20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하나요?

◦ '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'는 학교에 제공되는 저작물의 내용, 수량, 공급일 등의 정보를 확정하는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. 따라서 학교에 **콘텐츠 공급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작성**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◦ 작성 내용은 학교-예술강사 간 협의된 사항대로 기입하되, **동의서에 기재된 공급일과 시수 등 정보는 출강결과 등록 시 기재한 출강일, 출강 시수 등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**하여야 합니다.

◦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며, **예술강사는 그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**하셔야 합니다.

- 이메일, 홈페이지 등 지정된 제출 창구는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21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제공하는 콘텐츠 수량에 따라 각 개별 작성하여야 하나요?

◦ 콘텐츠 개당 또는 1차시분당 반드시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, 학교와 예술강사의 편의에 따라 적절히 변경 또는 추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- 단, 여러 수량의 콘텐츠를 각 다른 날짜에 제공하며 동의서는 단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콘텐츠별 '공급일'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※ 온라인시스템 내 게시된 별도 매뉴얼 참조

Q22 원격수업과 관련, 개인정보 보호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

◦ 학교와 예술강사 모두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**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등에 보안 프로그램(백신) 설치**가 필요합니다.

◦ 아울러 '② 콘텐츠 제작·활용'에 따른 콘텐츠의 수발신 과정에서 **수신인이 불명확한 전자메일 및 문자 등은 열어보지 않도록 유의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예술강사 원격수업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기한 온라인 개학에 따라 최초 시행되는 사항으로 Q&A등의 내용에 다소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본 Q&A의 내용은 향후 원격수업의 진행 경과 등 반영하여 필요시 업데이트 및 재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Ⅴ. 관련 문의처 (17개 시·도 지역운영기관 연락처)

지역	분야	지역운영기관	전화번호
서울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	02-744-8058
	7개	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	1800-8661
부산	국악	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	051-412-2665
	7개	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	051-412-2666
대구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	053-256-7957
	7개	꿈꾸는 씨어터(주)	1600-8325
인천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	032-875-4644
	7개	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	032-860-8008
광주	국악	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	062-527-1991
	7개	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	062-681-9230
대전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	042-256-4957
	7개	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	042-629-7546
울산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	052-266-4764
	7개	문화예술센터 결	052-291-3855
세종	8개	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	042-629-7547
경기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경기도지회	031-548-1048
	7개	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	031-467-8476
강원	국악	강릉문화원	033-823-3207
	7개	강릉문화원	033-823-3204
충북	국악	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	043-299-8678
	7개	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	043-299-8679
충남	8개	(사)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	041-415-1455
전북	8개	(사)전통문화마을	063-232-1902
전남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	062-351-2360
	7개	(사)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	062-351-2362
경북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	054-742-1516, 1518
	7개	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	054-931-5345
경남	국악	창원국악관현악단	055-251-2074
	7개	㈜문아트컴퍼니	055-331-0816
제주	국악	(사)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	064-759-3888
	7개	서귀포문화원	064-763-3789